금융위원회	보도자료	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25.(수) 조간 배포 2026.11.24.(화) 09:00

보험업법 시행령·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('26.11.25.~'27.1.4.) 실시

✓ [1]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 차단
[2]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도입

금융위원회는 11.25일 **「보험업법 시행령」**(이하, '시행령') 및 **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**(이하, '검사제재규정') 개정안에 대한 **입법예고·규정변경예고**를 실시한다. 이번 개정안은 개정 「보험업법」(법률 제21907호, '26.9.8일 공포, '27.3.9일 시행)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, [1]**보험모집종사자 결격사유**의 기준이 되는 **금융관계법률의 범위**를 규정하고, [2]**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**에 대한 **업무정지 갈음 과징금**의 **부과기준**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〈 주요 내용 〉

1 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 차단

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만큼 **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**이 요구된다. 그러나 그간 모집종사자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「보험업법」과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로 한정되어 **보험사기 등 다른 금융관계법률 위반자의 모집시장 진입을 막는 데 한계**가 있었다.

이에 개정 「보험업법」에 따라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이 되는 **"금융관계법률"**의 범위를 ❶**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**, ❷**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**, ❸**「형법」 제347조**(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), ❹**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**,

❺**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***으로 규정한다. 이는 보험모집인과 유사한 **대출모집인, 유사투자자문업자**의 **결격사유 입법례**와 **같은 수준**으로, **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**하여 **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**하고 **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금융관련법령(지배구조법 시행령 §5) :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 등 총 65개

2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도입

현재는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(이하 'GA 등')의 위반행위에 대해 **업무정지 처분**을 하는 경우, **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수 소속 설계사의 영업까지 일괄 중단**되어 **선량한 설계사의 생계에 피해**가 발생하고 **기존 계약자 관리에도 공백**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.

이에 개정 보험업법은 **소속 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**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번 시행령 및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은 그 **부과기준을 마련**한다.

우선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가 **귀책사유가 있는 소속 설계사의 수 및 비율, 예정된 업무정지기간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보장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한다. 과징금은 **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(모집수수료 등)을 영업일수로 나눈 1일당 과징금에 업무정지 기간을 곱하여 산정**하되,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 등을 고려하여 **2분의 1 범위에서 가감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업무정지 6개월분을 상한**으로 한다. 검사제재규정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을 **위반행위에 가담한 소속 설계사가 150명 이하이거나 소속 설계사의 15% 이하인 경우**, 또는 **GA 등의 지시·감독에 따라 설계사가 단순히 조력한 경우**로 구체화한다.

이를 통해 **위반행위와 무관한 선량한 설계사의 생계를 보호**하면서도, **금전 제재를 GA 등에 직접 부과**하여 **제재의 실효성을 확보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〈 향후 계획 〉

금번 시행령 및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은 **'26.11.25일(수)부터 '27.1.4일(월)까지 입법예고·규정변경예고**가 진행된다. 이후 규제개혁위원회·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·국무회의 의결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**개정 보험업법 시행일('27.3.9일)에 맞추어 시행**할 예정이다.

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개정 제도가 **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**하고, 시행 이후에도 **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■ **예고기간** : 2026.11.25일(수) ~ 2027.1.4일(월) (40일)

■ **입법예고·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
- 전자우편 : noweyh@korea.kr - 팩스 : 02-2100-2947

※ **개정안 전문(全文)**은 "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› 정책마당 › 법령정보 ›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임형준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혜원 (02-2100-2967)
< 공동 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권홍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박원규 (02-3145-7474)
< 공동 >	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	책임자	국 장	손인수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현중 (02-3145-726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